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제일약품(주) 등 83개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레보플록사신 단일제(100mg 정제)]

1. 관련 : 의약품관리과-6467호('22.7.29.) 및 의약품관리과-6920호('22.8.12.)
2. 우리 처(의약품관리과)에서는 "레보플록사신 단일제(100mg 정제)" 품목 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3.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2조,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레보플록사신 단일제(100mg 정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니,
4. 귀 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변경명령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다음 방법에 따라 품목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종이허가증의 경우,

- 품목허가(신고)증 원본 이면(변경 및 처분사항 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 월 일	내 용	
2022.11.29. ↑ 변경 일자	사용상의주의사항 ↑ 변경명령 항목 기재	(의약품관리과- , 2022.8.29.) ↑ 변경명령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 품목허가(신고)증 원본에 변경 명령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보관·관리할 것

나. 전자허가증의 경우,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확인할 것

다. 변경일자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변경된 내용을 첨부 또는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품목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공급업소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당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5.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처 또는 중앙행정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참고로, 동 기간내에 상기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업체 및 품목 현황.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심사원	최수진	주무관	김정현	사무관	이겨레	의약품관리과	전결 2022. 8. 29.
협조자						과장	오정원
시행	의약품관리과-7396	(2022. 8. 2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78	팩스번호	043-719-2650	/	sujinchoi88@korea.kr		/ 비공개(5,7)